

청주 SK VIEW 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청주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청약)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7.04.(목)	24.07.09.(화)	24.07.15.(월)	24.07.16.(화)~ 24.07.17.(수)	24.07.19.(금)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9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04.(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34 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1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66 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본 계약취소주택은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은 세대 관람이 불가하며, 청약 당첨된 분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인 입주기간에 관람 가능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으로 입주 시까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7.09.(화)	24.07.15.(월)	24.07.16.(화)~24.07.18.(수)	24.07.19.(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76, SK자이 VIEW 단지내 피트니스 센터)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 - 521 호(2024.07.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76 (봉명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9층 14개동 총 1,745세대 중 일반공급 1,097세대(조합원 637세대, 보류지 11세대 제외)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2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생애최초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개시일 2024.06.11.(화)]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계
2024930034	01	059.9910C	59C	59.9910	18.0068	77.9978	36.7551	114.7529	31.3167	1	-	1	1
	02	084.9695	84	84.9695	23.8924	108.8619	52.0589	160.9208	43.7089	1	1	-	1
합 계										2	1	1	2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C	84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	-	1
합 계	1	1	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		층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추가 부대경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059.9910C	59C	110	1801	18	1	68,891,000	178,009,000	246,900,000	4,000,000	250,900,000	25,090,000	225,810,000
084.9695	84	113	101	1	1	96,152,000	235,148,000	331,300,000	4,000,000	335,300,000	33,530,000	301,77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10.)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이자비용, 재판매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준공 완료 후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용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식표기	동	호수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9C	110	1801	14,000,000	1,400,000	12,600,000
84	113	101	18,000,000	1,800,000	16,200,000

※ 상기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

약식표기	동	호수	추가선택품목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9C	110	1801	10,100,000	1,010,000	9,090,000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4대(LG_거실+안방+침실1+침실2 .[가전제품] - 하이브리드쿡탑/연동형 후드[하츠] 쿡탑(IH-362DTL)+후드(DAC-90SCI) .[기타 품목 (가구, 마감재, 조명 등)] - 아트월 특화(이태리산 타일 + 스위트판넬)
84	113	101	19,050,000	1,905,000	17,145,000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5대(LG_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제균&시스클라인 System] SK 제균환기 시스템 + GS 시스클라인 3대 (거실+안방+주방) .[가전제품] - 하이브리드쿡탑/연동형 후드[하츠] 쿡탑(IH-362DTL)+후드(DAC-90SCI) - 전기오븐(SK매직) EON-B450M - 식기세척기[삼성] DW60T7075FS .[기타 품목 (가구, 마감재, 조명 등)] -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아트월 특화(스페인산 타일 + 스위트판넬)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시공되어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2.06.10.)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1 참조)</p> <p>-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IV-1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p>-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p> <p>*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p> <p>*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p> <p>*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p>
비고	<p>■ 자녀기준</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04.(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조회기간 : 2024.07.15.(월) ~ 2024.07.24(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7.15.(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공통서류		특별공급 청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 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청약신청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 ~ 만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임신확인서 인정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사무실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0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당첨자(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사무실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해당자	■ 소득증빙 대상 세대원(성년자) 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청약신청자)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소명 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현황 사레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 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소득 증빙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등기소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과거5개년도) ③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거5개년도) ③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 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분: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07.15.(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07.19.(금) 10:00~16:00 • 계약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76, SK자이 VIEW 단지내 피트니스 센터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인지세 납부 확인증 (전자수입인지 구매내역)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	
	○	○	
	○	○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상기 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 입주자 순차별 유선 안내**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 24.07.20.(토)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4.07.20.(토)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등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206-1408	봉명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하나은행	231-910040-341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는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 면적은 각 단지의 특정 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동제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단, 단위세대 벽체 공용면적은 단위세대에 배분)되었으며,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또한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문의 하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근 우수 및 생활하수가 단지 내를 통하여 배출되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비계획상 단지 남측 및 동측에 공원 녹지 및 지상주차장 부지가 있어 인접 세대(특히 109동, 110동, 112동, 114동)는 소음, 분진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 통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경사도로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소방(비상)도로 등)
- 본 사업지는 인근 청주산업단지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청주산업단지는 오래전에 개발 입주된 공장들이 산재하여있어 행정기관에서 악취 관리를 한다하여도 현재까지는 일부 냄새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정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사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용 조명 및 보안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나 주동 형태로 인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조정시설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수와 조정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각 동 전면에 조정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해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샤워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에 설치 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 유지,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지에스건설(주)가 공동시공하는 사업장으로 동별로 구분하여 시공 및 입주 후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시공범위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 지에스건설(주)의 시공범위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3동, 114동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101동~102동/103~106동, 109동~112동/107~108동, 113동~114동의 레벨차가 서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 본 단지는 같은 동이더라도 접해있는 지면에 따라 동출입구의 위치가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당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필로티가 적용된 각 동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출입구의 폭 및 전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2동 1, 2호 라인과 3, 4호 라인은 로비층 주 출입구 통로폭이 협소하여 이사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지상 총 12대)은 아파트와 별도로 설치 및 구획되어 있고, 북측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앞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자전거보관소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5, 106, 111, 112동 데크 하부(지하1층)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샤워 및 탈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주민카페 등)이 위치하고, 지상 1층에 티하우스, 어린이집, 통학버스대기공간,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램프(경사로) 출입구 인접동 103동, 105동, 106동, 111동 저층 세대는 계약 전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크기(너비 2.3M, 길이 5.0M)로 설치되고, 또한 일부 주차는 확장형 주차(너비 2.5M, 길이 5.1M), 경형 주차(너비 2.0M, 길이 3.6M), 장애인 주차(너비 3.3M, 길이 5.0M), 평형 주차(너비 2.0M, 길이 6.0M)로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 상가 주차구획이 되어 있으며, 상가 이용 차량은 단지 차량 출입구(북측)를 이용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단지 레벨차에 의해 각 동, 코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로 연결되지 않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 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직통계단 및 주차내내 이동동선을 통해 해당 세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불편함에 대해 인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로로의 길이와 위치,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여성,교통약자주차전용,장애인용,전기차,대형,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2대와 완속충전기 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별 접근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해당 전장고 초과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최소2.3m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
- 지하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단지 북측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이며, 진입층에서만 택배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레벨차에 의해 동별로 해당층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하층 이외의 층에서는 택배차량의 진입 및 통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하 무인택배함은 각 주동의 세대별 접근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경비실, 문주 등),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 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주민운동시설 등에 인접한 해당 동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 운동을 위한 시설로서 이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냄새,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녹지 구간에 에어매트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며, 이 공간에는 교목을 식재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정비계획구역으로 설치되는 주차장부지 및 공원은 실시계획인가의 설계에 따라 산책로 또는 소음 발생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냉·난방 실외기,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쓰레기 보관소 인접 세대는 조망,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레벌차에 의해 각 동별 외부 저층부 석재마감 구간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외벽 마감(동 필로티 내부 벽면 등 일부 석재쌓칠 포함)은 석재 적용으로 인하여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 기본 천장고는 2.3M(거실, 침실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상이합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과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다용도실 내부 마감 단차는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용 등 신발의 높이와 상관이 없으므로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발코니 등 타일 패턴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공사 시 자체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발코니 1개소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리모컨 작동)는 해당 부위 발코니 등기구 및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써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 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발코니 유리난간 설치될 시에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이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기기등의 전원 연결을 위해 주방가구 일부를 타공하거나, 점검구 혹은, 배선기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 및 별도의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확장형 세대가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 및 보조주방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벌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치 및 개소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 보관소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세대 정화조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쓰레기 보관소는 동별 위치 및 주동 출입구에서의 동선에 따라 세대마다 거리가 다르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별도의 쓰레기 보관소가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옆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특히 107동, 108동)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107동, 108동, 113동, 114동은 지하 1층에 있으며, 101~106동, 109~112동은 지하2층에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 기준이며, 동별코아별로 무인택배함 접근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이며,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방향으로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지붕 또는 건물주변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레벨차로 105동, 106동, 111동, 112동 데크하부(지하1층)와 지상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용자의 통행과 활동에 따라 인접 세대에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붕 또는 건물주변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차량 출입구와 인접하게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 시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옥상 및 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조경면적 축소 및 인접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붕 및 지상 1층 인근에 실외기 및 DRY AREA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동은 냄새 및 소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78g(내진 능력)입니다.
- 비상 발전기 운전 시 운전 전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샤워실)용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111동 지상 1층 혹은 주민운동시설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와 운전소음 등 발생 하루 수 있습니다.
- 전동 출입부 인근에 DA 및 주민공동시설 실외기가 위치하여 출입동선 및 인접 세대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전기실, 발전기실용 Dry Area에 인접 세대는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문주 설치로 인한 인근 동 저층 세대 조망 및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3동, 105동, 113동 저층세대 계약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내 옥외 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운동시설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111동, 112동 하부에는 데크층이 형성되어 있으니 관련세대의 입주예정자께서는 위치를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등은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 조절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가구조명 및 대피소 조명은 일괄소등 스위치를 작동하여도 소등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세대 내 월패드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세대 창호 외부에 설치되는 적외선 감지기는 지상1~2층(필로티 포함) 세대에 설치되며, 실외기실 그릴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동체 감지기는 전층 거실에 설치되며,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동체 감지기는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여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하이브리드 쿨방 용량은 3.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 후 3.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 전원은 단상 220V(60Hz)가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다소의 진동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천장내부에 설치된 환(FAN) 점검구와 자동식소화가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등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전열교환기나 연결덕트, 기타 환기덕트, 상부층 배수관 등은 부득이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우수나 배수용 배관이 노출로 설치되어 상층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치나 수량은 각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 최하층 및 필로티 지상층은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동파예방을 위해 보일러 하부 배관에 동파방지열선이 설치된 경우 동절기에는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각 동 출입구 천장과 지하주차장은 배관, 배선,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 물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일부 시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CCTV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 인입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고,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조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 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 수신이 양호한 동(111동)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선통신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지하층, 지상조경구간 및 각 동의 지붕층 또는 옥탑층)가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변 세대에 소음 및 조망 간섭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위치한 인접동은 소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적법한 설치기준에 준수할 예정입니다. 단, 상기 계획은 인-허가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지하 동통신실등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 예정되오니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아파트 주변 난시정 해결을 위해 옥상층에 TV방송용 중계기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NUGU Smart Home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자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서비스는 준공 후 3년간 무료로 제공되며, 해당기간 이후로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X 기타사항

- **입주일** : 잔금납부 시(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개시일 2024.06.11.(화))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티하우스, 맘스라운지(클린에어스테이션), 작은도서관, 독서실, 연회장, 주민카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샤워실 등),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 2.3m (단, 지하 1개층 LV.53.0(LV.54.5)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택배차량 이동 유효고 2.7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 2.3(복측 출입구 2.7m)
- **학교 배치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금회 공동주택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병명초등학교입니다.** (단, 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1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임시사업 건축주 :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임시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0.10.31 주소 : 충청북도 충주군 봉명1구역 190단지 1차 층 수 : 지하2층, 지상29층 면적 : 281,412.00㎡ 건축물대장번호 : 공동주택 (충청북도청사) 제2014-2138-8 설계사 : (주)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17-184 인증기관명 :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 2017.08.03 ~ 시용감시일 인증등급 : 예비인증 인증기준 : 별첨(제11조제4항) 인증기준 : 별첨(제11조제4항)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제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7년 08월 03일

한국감정원

※ 예비인증은 완전 건축물을 최종 확인한 후 발급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너지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임시사업
2. 신청자 :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임시사업조합
3. 평가등급

1. 소용량냉난방급		2. 구동냉난방급		3. 환기냉난방급	
에너지효율	★★★★	에너지효율	★★★★	에너지효율	★★★★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효율	★★★★	에너지소비효율	★★★★	에너지효율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비 인증 등급을 부여합니다.

2017년 08월 03일

한국감정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에너지 효율		인증 정보	
인증번호	2017-184	인증기관명	한국감정원
인증등급	예비인증	유효기간	2017.08.03 ~ 시용감시일

2017년 08월 03일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초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초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전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 규정에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 이 지침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공동주택(「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에 이를 적용합니다.

-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적용합니다.
- 좌식 싱크대 적용 시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 공간 협소로 온수분배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를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밸브의 위치는 주방 쿡탑이 위치한 주방 상부장 하단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이나 휠패드를 이용한 on/off 조작이 가능합니다.
- 향후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며, 전매 시에도 상기 사항이 같이 포함됩니다.
- 입주민의 편의상 타세대와 달리 시공이 상이 하므로 그에 따른 하자 및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호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세종기술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금액	4,274,622,000	888,957,000	761,2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수탁자 겸 매도인)	시공사	
상호	봉명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지에스건설(주)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94번길 48, 2층(봉명동, 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50171-0007773	110111-0038805	110111-000269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93번지 일원 (☎ 043-265-109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